

강원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강원도의회 제306회 임시회(2.7.~2.17.)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18건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2. 02. 17.)
의회운영 위원회 (1)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상화 의원	원안가결
기획행정 위원회 (2)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허소영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대하 의원	원안가결
사회문화 위원회 (8)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권순성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이종주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김혁동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규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허소영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희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병석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위호진 의원	원안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2)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미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김정중 의원	원안가결
경제건설 위원회 (2)	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권순성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3)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혁동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정유선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허소영 의원	원안가결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2. 2. 17.(목)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0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심상화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1)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신도현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홍천2),
최재연 의원(교육위원장 · 국민의힘 · 철원1), 김상용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삼척1),
신영재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1),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2),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철원2),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강원도의회회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강원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의회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을 개발 · 운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이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참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심상화 의원



박효동 의원



신도현 의원



최재연 의원



김상용 의원



신영재 의원



심영미 의원



윤석훈 의원



이종주 의원



한금석 의원



허소영 의원

■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양구),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양양),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역량 강화 사업,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 조사 및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정비, 시민사회조직의 자율성 · 공공성 제고 및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둔다. ③ 도지사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대 · 내외 홍보 지원 사업 및 지속가능 발전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원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허소영 의원



박효동 의원



김규호 의원



김정중 의원



원태경 의원

▣ 강원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1)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양구),

박인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2),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강원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등의 피해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진실규명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등에게 안내 · 홍보 및 진실규명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에게 조력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 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강원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 · 학술행사,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주대하 의원



박효동 의원



김규호 의원



박인균 의원



윤지영 의원

▣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의회운영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3),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강원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부모의 임신 · 출산, 학업 · 부모교육, 취업, 자녀의 양육 · 교육,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 의료 · 주거 · 활동 · 자립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권순성 의원



김진석 의원



반태연 의원



정수진 의원



정유선 의원



조성호 의원



허민영 의원



허소영 의원

▣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2)

■ 공동발의 :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 및 갇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등” 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여 강원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등 및 가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직업훈련 · 직업교육, 가족의 심리 상담 · 심리 치료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종주 의원



허소영 의원

▣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 대표발의 :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 공동발의 :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3),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도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및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예방 · 대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를 제거하는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김혁동 의원



반태연 의원



최종희 의원



허민영 의원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4)

■ 공동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3),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상시 점검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남상규 의원



권순성 의원



김혁동 의원



반태연 의원



최종희 의원

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 대표발의 :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 공동발의 : 최재연 의원(교육위원장 · 국민의힘 · 철원1), 김상용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삼척1),
신영재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1),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3),
한창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횡성1),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강원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정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 ·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강원도의 정기간행물 및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허소영 의원



최재연 의원



김상용 의원



신영재 의원



원태경 의원



한창수 의원



허민영 의원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강원도 내 아동,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4)

■ 공동발의 :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정선1), 김상용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삼척1),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2),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태백2)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역외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지역외상체계 진료지침의 개정,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및 개선,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개선, 병원전단계 응급처치관련 외상처치 교육, 강원도민 대상 외상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및 외상환자와 그 가족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관련된 인프라 개선 및 지역사회 외상예방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소방공무원, 항공이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응급의료지원센터장 등으로 구성된다.



김병석 의원



장덕수 의원



김상용 의원



김준섭 의원



김혁동 의원

■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4)

■ 공동발의 :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3)

강원도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 및 놀이문화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위호진 의원



박윤미 의원

함종국 의원

■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양양)

■ 공동발의 : 신도현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홍천2),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양구),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1), 박병구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1),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2),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재해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용 시설 · 임업용 시설 · 어업용 시설(이하 “농업용 시설등”이라 한다)의 전기 안전 점검, 노후화된 농업용 시설등의 전기 수리 및 교체,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기자재, 인력 및 비용의 지원, 전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등과 농수산물의 피해 복구,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보급,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홍보, 전기재해 예방 ·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김정중 의원



신도현 의원



김규호 의원



장덕수 의원



박병구 의원



신명순 의원



정수진 의원

■ 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 공동발의 :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3),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도 내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시설 구축 및 확대에 필요한 공공장소의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 군에서 수행 중인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확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권순성 의원



반태연 의원



정수진 의원



조성호 의원



허민영 의원

■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 공동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박인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2),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자와 어린이 등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하며 도지사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어린이 등으로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제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시 반영해야 한다.



조성호 의원



권순성 의원



김혁동 의원



박인균 의원



허민영 의원

■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 공동발의 :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3),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행복교육지구 지정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행복교육지구”란 학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총체적 지원이 가능한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교육감은 시·군과의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로 행복교육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로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 마을,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계획 수립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활동가 발굴 및 성장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을교육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마을교육공동체 연구·분석 및 평가, 마을교육공동체 홍보 및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운영 등을 수행한다.



김혁동 의원



반태연 의원



최종희 의원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공동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박인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2),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1),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강원도 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구 · 학습보조기 ·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수어 통역 · 문자통역 지원,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 지원,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등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 및 ③에 따른 사업 등에 대해 강원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정유선 의원



권순성 의원



박인균 의원



주대하 의원



최종희 의원



허민영 의원



허소영 의원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 대표발의 :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 공동발의 :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양양),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3),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철원2),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도 내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학교급식의 위생 ·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식재료 사용 감축에 관한 사항 및 학교급식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 ·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학교급식점검단을 둔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감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공개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여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허소영 의원



김정중 의원



김혁동 의원



반태연 의원



정유선 의원



한금석 의원



허민영 의원